

인쇄 : 김광석 / 폐자원관리과 (2010-11-30 14:20:51)



환경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폐석면의 폐기물배출자 범위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

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면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폐석면의 배출자를 건설폐기물의 경우와 같이 최초 도급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 : 건축주, 공사 발주자

-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함(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)

○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: 건축주, 공사 발주자 이외에 최초 도급자도 배출자가 될 수 있음

- “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”의 범위에 “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”를 인정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). 끝.

인쇄 : 김광석 / 폐자원관리과 (2010-11-30 14:20:51)

환경부



수신자 광주광역시장(환경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장(환경정책과장), 대구광역시장(환경정책과장), 울산광역시장(환경정책과장), 부산광역시장(환경정책과장), 경상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강원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전라남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충청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환경관리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경상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경상남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서울특별시장(환경정책담당관), 한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낙동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금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영산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원주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대구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전주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

전결 04/14

주무관

김광석

환경사무관

민종기

폐자원관리과장

최종원

별조자

시행 폐자원관리과-625 (2009. 04. 14.) 접수

우 427-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/ <http://www.mre.go.kr>전화 02-2110-6935 전송 02-502-9292 / kskim@mre.go.kr / 대국민공개